

제4장 표창 종류 및 기준

제19조(초등 졸업 예정 학생 표창)

- ①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소정의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자로서 본교 국어과정의 6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반 학생을 졸업생으로 인정한다.
- ② 수상자 사정의 내용은 교과활동 성적, 수상실적 및 재학 연수를 점수화하여 합산 처리한다.
 - (가) 교과활동 성적은 6학년 1,2학기 국어,수학,사회,과학과 외국어교과(English, Math, IPC)에 대해 각 교과 당 8점 만점으로 합산한다. (1,2학기×7교과×8점=112점)
 - (나) 수상실적은 6학년 1년 본교 재학 동안의 실적 가운데, 학교장상(1등(급) 1점, 2등(급) 0.7점, 3등(급) 0.4점 / 중 택 3개)과 기타 공인된 대회상(매회 1점 / 총 2점 이내)으로 구분하여 합산한다.
 - (다) 전교학생회 임원인 경우 전교회장 3점, 전교부회장 2점을 부여한다.
 - (라) 본교 재학 연수에 따라 매년 1점씩 가산점을 부여한다(1년 미만 버림).
 - (마) 위 사정안의 합산점이 동점인 경우는 교과 성적 고점자, 본교 재학기간이 긴 자가 우선한다.
- ③ 총영사상의 수상자는 본교 한국어과정에서 1,2학기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, 학교장상을 비롯한 다른 표창의 수상자는 본교에서 2학기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.
- ④ 대외상 중 총영사상은 종합순위 1위에게 수여하며 기타 대외상은 매년 상황에 맞게 수여한다.
- ⑤ 학교장상은 학업우수상, 공로상, 봉사상이 있으며 다음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담임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회의 결정을 거쳐 수여한다.
 - (가) 학업우수상 : 학년 교과 활동 평가 평균 6점(잘함)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외상과 중복해서 수여할 수 없다.
 - (나) 공로상 : 성적과 관련 없이 전교어린이회 임원으로 활동한 어린이에게 수여하며 대외상과 중복하여 시상할 수 있다.
 - (다) 봉사상 : 교내봉사활동, 교외봉사활동, 현장학습 조장 역할 우수자로 대외상과 중복하여 시상할 수 있다.
- ⑥ 당해연도 학생선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외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
활동내역	배점	세부내역	
교과활동	112	졸업학년도 1,2 학기 국어, 수학, 사회, 과학, 외국어과 (English, Math, IPC)의 수행평가 및 단원평가를 포함한 수시평가 결과를 환산	
재학연수	6	본교 재학 연수에 따라 매년 1점씩 부여	
학생회활동	3	전교회장 3점	전교부회장 2점
수상경력	5	대외상	매회 1점 / 총 2점
		대내상	1등(급) 1점, 2등(급) 0.7점, 3등(급) 0.4점 / 중 3개 선택
총점	126		